

대한민국정부  
인 지 세  
원  
동대구세무서장  
후납승인 년 호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와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은행용

# 대출거래약정서 (II)

## (가계통장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)

담당자	책임자	금융팀장	부점장

DGB대구은행 DGB

20 년 월 일

- 본인은 주식회사 대구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.
-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-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, 대출이자율이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본인 (채무자)	성명			(서명 또는 인)
	주소			

### 제 1 조 거래조건

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(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“□”내에 “V”표시합니다.)

① 대출과목: (대출종류: )

② 거래구분: 한도거래

③ 담보대출 유무

- 신용대출: 본 대출약정은 신용대출로 운용하기로 합니다.  
 담보대출: 본 대출약정은 제3조에서 정한 담보계약을 담보로 운용하기로 합니다.

④ 대출(한도)금액

금 원

⑤ 대출기간

대출개시일	년	월	일
대출만료일	년	월	일

⑥ 대출이자율

고정금리 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)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기간만료일까지 연 ( )%
	<input type="checkbox"/> ( ) 기준금리 + ( )%
변동금리 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가계용)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)	<input type="checkbox"/> ( )개월 시장기준금리 + ( )%
	<input type="checkbox"/> 통장대출기준금리 + ( )%
	<input type="checkbox"/> ( ) COFIX연동기준금리 + ( )%
금리변동주기	<input type="checkbox"/> ( )개월

⑦ 지연배상금률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3조 제5항을 적용하며, 대출이자율이 지연배상금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출금리+2.0%를, 법적절차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합니다.

확정 지연배상금율: 연 ( )%

⑧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

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

⑨ 대출실행방법

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.

⑩ 상환방법

자유로이 상환하되, 대출기간만료일에는 전액상환합니다.

\*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 또는 이자지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⑪ 이자지급방법

- 최초 이자는 대출개시(약정)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, 이후의 이자는 매 월 최초 대출약정 해당일에 지급합니다.  
 이자는 매월 ( )일에 지급합니다.

\*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 또는 이자지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⑫ 대출기간 자동연장

- 대출기한 도래시 은행에서 정한 자동연장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별도의 조건 변경(기간연장)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간연장을 처리하며, 연장기간 및 적용금리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.

\* 자동연장 요건

- 대출 후 신용등급이 은행에서 정한 기준 이내일 것
- 연기일에 연체(대출, 신용카드)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 제3항 제5호의 정보가 없을 것.

### 제 2 조 인지세의 부담

-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### 제 3 조 담보의 제공

①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

(단위: 원)

종별	증서번호	명의인(또는위탁자)	금 액 (계 약 액)	20 . . . . 까지 입금 누계액	증서 일자	지급 기일
	계좌번호	수익자				

3 0 0 1 0 2 1



② 기타담보 제공명세

담보관련 계약서명	등기소명	담보제공자	등기(확정일자)번호	비고

※ 제1조3항의 담보대출로 약정한 경우로서, 후취담보 등 본 대출약정 이후에 담보취득이 확정될 때에는 상기 내용을 은행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특약사항

① 기타 특약

	본인	(서명 또는 인)
--	----	-----------

제 5 조 지연배상금

- ①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,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 6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

- ① 「시장기준금리」라 함은 금리만기가 일치하는 시장대표상품의 유통가격(MOR)에 대응하여 은행의 자금사정, 경제여건 등을 감안 은행에서 결정하여 매일 고시하는 금리를 말하며,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변동주기 중 본인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(1개월, 2개월,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, 10년, 20년)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② 「통장대출기준금리」라 함은 시장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되, 당행의 자금사정, 시장금리의 동향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서장이 결정하여 매일 고시하는 금리를 말하며, 결산일에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「COFIX(자금조달비용지수)연동 기준금리」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단기, 신규취급액기준 및 잔액기준COFIX를 기초로 은행의 자금사정, 경제여건, 시장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은행에서 매주(단기COFIX 연동기준금리) 또는 매월(신규취급액기준 및 잔액기준COFIX 연동기준금리)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리를 말하며,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「단기 COFIX연동기준금리」는 3개월마다 변동되고 「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기준금리」 및 「잔액기준 COFIX연동기준금리」는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변동주기(6개월, 12개월) 중 본인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 7 조 대출금 및 이자 지급방법 등

-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가계통장대출 기본계약 및 가계당좌예금(이하 "모계좌"라 합니다)에 입금된 자금(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,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)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.
-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,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빠져나, 대출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, 대출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, 기한의 이익 상실일 그 다음 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④ 대출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,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,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,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.

제 8 조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

- ①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, 이 약정에 의하여,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.
- ②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, 가계당좌대출의 기본한도액 범위내에서 이 약정을 맺은 때에는, 제1조의 대출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쪽에서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대출기간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,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, 본인이 대출만료일 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 됩니다.

제 9 조 여신관련 수수료

- 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수수료는 대출실행 후 최초이자 입금기일에 납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대출이자 납부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과 동시에 납부하기로 합니다.

구분	금액	구분	금액
( )수수료	( )원	( )수수료	( )원
( )수수료	( )원	( )수수료	( )원

- ② 여신관련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여신관련수수료에 우선하여 이체하기로 합니다.
- ③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이외에 여신거래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·비용은 은행이 사전에 별도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하기로 합니다.

제 10 조 담보권 설정

-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조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(통장)의 인도를 마쳤습니다.
-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·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·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
-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·개서·갱신·분할·병합·종액·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
-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제3조에 표시한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 담보·보험

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한,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,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

제 12 조 담보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

담보부동산 매매시 은행에 신고후 은행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승계해야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자·매도자 모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매수인이 잔여채무를 연체하고 담보물의 처분가가 회수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은 매도인에게 잔여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매수인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였다더라도 매도인의 기타 채무 연체를 사유로 은행은 매수인의 담보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. 매수인 신용상태, 은행의 심사기준, 법률 및 외부규정 제한 등에 의하여 승낙이 불가할 수 있으니 담보부동산 매매전에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② 기타담보 제공명세

담보관련 계약서명	등기소명	담보제공자	등기(확정일자)번호	비고

※ 제1조3항의 담보대출로 약정한 경우로서, 후취담보 등 본 대출약정 이후에 담보취득이 확정될 때에는 상기 내용을 은행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특약사항

① 기타 특약

	본인	(서명 또는 인)
--	----	-----------

제 5 조 지연배상금

- ①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,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 6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

- ① 「시장기준금리」라 함은 금리만기가 일치하는 시장대표상품의 유통가격(MOR)에 대응하여 은행의 자금사정, 경제여건 등을 감안 은행에서 결정하여 매일 고시하는 금리를 말하며,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변동주기 중 본인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(1개월, 2개월,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, 10년, 20년)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② 「통장대출기준금리」라 함은 시장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되, 당행의 자금사정, 시장금리의 동향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서장이 결정하여 매일 고시하는 금리를 말하며, 결산일에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「COFIX(자금조달비용지수)연동 기준금리」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단기, 신규취급액기준 및 잔액기준COFIX를 기초로 은행의 자금사정, 경제여건, 시장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은행에서 매주(단기COFIX 연동기준금리) 또는 매월(신규취급액기준 및 잔액기준COFIX 연동기준금리)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리를 말하며,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「단기 COFIX연동기준금리」는 3개월마다 변동되고 「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기준금리」 및 「잔액기준 COFIX연동기준금리」는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변동주기(6개월, 12개월) 중 본인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 7 조 대출금 및 이자 지급방법 등

-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가계통장대출 기본계약 및 가계당좌예금(이하 "모계좌"라 합니다)에 입금된 자금(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,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)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.
-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,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빠져나, 대출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, 대출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, 기한의 이익 상실일 그 다음 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④ 대출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,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,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,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.

제 8 조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

- ①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, 이 약정에 의하여,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.
- ②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, 가계당좌대출의 기본한도액 범위내에서 이 약정을 맺은 때에는, 제1조의 대출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쪽에서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대출기간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가계당좌대출의 경우,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, 본인이 대출만료일 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 됩니다.

제 9 조 여신관련 수수료

- 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수수료는 대출실행 후 최초이자 입금기일에 납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대출이자 납부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과 동시에 납부하기로 합니다.

구분	금액	구분	금액
( )수수료	( )원	( )수수료	( )원
( )수수료	( )원	( )수수료	( )원

- ② 여신관련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여신관련수수료에 우선하여 이체하기로 합니다.
- ③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이외에 여신거래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·비용은 은행이 사전에 별도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하기로 합니다.

제 10 조 담보권 설정

-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조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(통장)의 인도를 마칩니다.
-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·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·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
-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·개서·갱신·분할·병합·종액·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
-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제3조에 표시한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 담보·보험

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한,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,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

제 12 조 담보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

담보부동산 매매시 은행에 신고후 은행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승계해야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자·매도자 모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매수인이 잔여채무를 연체하고 담보물의 처분가가 회수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은 매도인에게 잔여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매수인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였다더라도 매도인의 기타 채무 연체를 사유로 은행은 매수인의 담보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. 매수인 신용상태, 은행의 심사기준, 법률 및 외부규정 제한 등에 의하여 승낙이 불가할 수 있으니 담보부동산 매매전에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